

#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절차 FAQ

※ 아래는 문의가 잦은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합격자입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22.(월)~10.1.(수)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고)  
 →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관계서류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결격사유 등 조회 → 이상 없으면 관할우체국으로 임용추천 → 임용  
 ▶ 구체적인 임용 시기는 채용후보자 등록 순번 및 결위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Q. 2025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안내하는 기[9.22.(월)~10.1.(수)까지]에 해당 지방우정청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용포기 의사에 있는 분은 임용포기서 작성, 임용유예 신청을 하실 분은 임용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유예 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을 먼저 하여야 가능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매수	비고
①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사진(3.5cm×4.5cm) 2매 (등록원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② 기본증명서(상세)	2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전체) ※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는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전국 가정법원 및 온라인 발급 가능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서 사본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
⑦ 경력증명서	1부	공무원경력 또는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등
⑧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 한
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한
⑩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 ※ 사진(3.5cm×4.5cm) 1매 부착
※ 전문의 소견서 및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각 1부	채용 신체검사 결과 「판정 보류」를 받은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⑪ 통장사본	1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통장
⑫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Q.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 《경력》에는 무슨 일까지 써야 합니까?**

**A.**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공영/민간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으로써 배치 후 인사에 참고가 될 만한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 특정경력자에 대한 특별추천 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채용후보자 등록 시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사항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작성 시 변경기재하면 됩니다.

Q.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A. <붙임4> 『각종서식 묶음』 중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제주청 사업지원과)로 변경신청 합니다.

※ 증빙서류

-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개명을 인정한 경우: 판결문 사본
-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한글, 한자)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정정결과 등

Q. **임용(추천)유예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A. ▶ 임용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붙임4> 『각종서식 묶음』 중 **임용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와 함께 해당 지방우정청에 제출합니다.

※ 임용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유예 사유:** 학업의 계속(재학 중인 대학교 졸업까지),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

Q.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추천)유예가 가능한지요?**

A. ▶ 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시험합격 후 새롭게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상 대학원 재학은 임용 추천 및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유예를 신청한다하여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기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임용유예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

Q.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여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

A.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 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2년의 기간 내에 학업도 마치고 임용도 받아야 합니다.

Q.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추천)유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